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71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6.
발 의 자 : 유동수 · 서영교 · 박찬대
박 정 · 이찬열 · 송영길
정유섭 · 윤관석 · 민경욱
신동근 · 홍일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「항만법」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항만법」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, 이를 현행법 의제 조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인가·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「항만법」 제59조제1항(제46조의 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60조제1항(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

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19호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9호 중 “승인”을 “승인, 같은 법 제59조제1항(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60조제1항(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</u></p>
19의2. ~ 39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19의2. ~ 3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